

군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이우천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규칙안 참고

2.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규칙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14,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livetailer@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군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군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이우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0. 11. .

발 의 자 : 이우천,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김귀근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2020.1.1. 시행됨에 따라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보다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규칙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2조)
- 나.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기준(안 제3조)
- 다.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항목(안 제4조)
- 라. 예산집행 자료 작성(안 제5조)
- 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범위(안 제6조~제7조)
- 바.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 및 점검 실시(안 제8조)
- 사.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안 제9조)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군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 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 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 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 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